

#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4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 I. 제안이유

2023회계연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II. 주요내용

#### 1. 결산개요

#####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 ○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953,587	707,924	245,663	173,081	6,469	66,113
일 반 회 계	848,834	628,168	220,666	151,907	6,110	62,650
공기업특별회계	38,073	33,567	4,505	2,814	-	1,691
기타특별회계	66,680	46,189	20,492	18,360	360	1,772

#####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640,249	686,267	751,465	900,458	953,587	10.5	
세 출(B)	518,500	551,244	589,869	648,019	707,924	8.1	
잉여금 (A-B)	소 계	121,750	135,023	161,597	252,439	245,663	19.2
	이 월 금	92,053	106,427	125,437	191,832	173,081	17.1
	보 조 금 반 납 금	3,930	4,691	6,421	16,468	6,469	13.3
	순 세계 잉 여 금	25,767	23,906	29,738	44,139	66,113	26.6

## 나. 세입·세출결산 분석

###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결산액	전년대비(%)	결산액	전년대비(%)
계	751,465	900,458	119.8	953,587	105.9
자 체 수 입	75,716	80,526	106.4	87,712	108.9
지 방 세	38,588	43,536	112.8	44,268	101.7
세 외 수 입	37,128	36,990	99.6	43,443	117.5
이 전 수 입	493,278	623,628	126.4	582,743	93.4
지 방 교 부 세	280,553	409,505	146.0	343,810	84.0
조 정 교 부 금 등	18,017	15,371	85.3	14,126	91.9
보 조 금	194,708	198,752	102.1	224,807	113.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등	182,471	196,304	107.6	283,133	144.2

###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결산액	전년대비(%)	결산액	전년대비(%)
계	589,869	648,019	109.9	707,924	109.2
일 반 회 계	526,776	591,499	112.3	628,168	106.2
일 반 공 공 행 정	29,292	62,066	211.9	33,594	54.1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7,708	26,327	148.7	30,128	114.4
교 육	6,677	8,272	123.9	9,001	108.8
문 화 및 관 광	51,753	61,837	119.5	80,461	130.1
환 경	51,558	51,133	99.2	46,301	90.6
사 회 복 지	90,515	93,520	103.3	105,690	113.0
보 건	11,020	13,853	125.7	12,952	93.5
농 립 해 양 수 산	102,565	106,026	103.4	127,571	12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0,993	15,877	75.6	14,640	92.2
교 통 및 물 류	27,422	34,024	124.1	36,128	106.2
국 토 및 지 역 개 발	56,399	53,008	94.0	61,008	115.1
기 타	60,873	65,555	107.7	70,695	107.8
특 별 회 계	63,093	56,520	89.6	79,756	141.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34,126	31,577	92.5	33,567	106.3
기 타 특 별 회 계	28,967	24,943	86.1	46,189	185.2

## 다. 기금결산 요약

○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25,868	792	5,078	4,286	26,6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630	△2,231	75	2,306	2,3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1,000	176	176	0	11,176
체육진흥기금	2,976	△314	1,048	1,362	2,662
자활기금	253	246	250	4	500
고향사랑기금	0	406	406	0	406
재난관리기금	972	333	899	567	1,305
옥외광고발전기금	173	33	49	16	206
식품진흥기금	129	△8	23	31	121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734	2,151	2,151	0	7,885

## 라. 재무제표 요약

○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3년	3,677,112	43,852	3,633,261	599,477	695,279	(75,563)
2022년	3,669,052	56,630	3,612,422	471,125	678,372	(207,247)
증감	8,060	(12,778)	20,839	128,352	16,907	△131,684

## 마. 재무제표 분석

○ 최근 3년간 자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3,460,648	100	3,669,052	100	3,677,112	100
유동자산	173,434	5.01	275,773	7.52	279,203	7.59
투자자산	2,860	0.08	2,576	0.07	2,028	0.06
일반유형자산	220,195	6.36	228,015	6.21	258,659	7.03
주민편의시설	477,290	13.79	498,633	13.59	505,943	13.76
사회기반시설	2,582,981	74.64	2,660,620	72.52	2,628,546	71.48
기타비유동자산	3,888	0.12	3,435	0.09	2,733	0.07

○ 최근 3년간 부채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60,074	100	56,630	100	43,852	100
유 동 부 채	15,081	25.10	22,161	39.02	11,493	26.21
장 기 차 입 부 채	33,672	56.05	22,719	40.12	21,217	48.38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1,321	18.85	11,750	20.86	11,142	25.41

○ 최근 3년간 비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25,873	100	471,125	100	599,477	100
인 건 비	77,271	18.14	81,809	17.36	84,356	13.61
운 영 비	144,399	33.91	155,266	32.96	201,204	32.47
정 부 간 이 전 비 용	8,119	1.91	8,162	1.73	7,284	1.18
민 간 등 이 전 비 용	142,325	33.42	161,186	34.21	155,067	28.29
기 타 비 용	53,759	12.62	64,702	13.74	151,566	24.45

○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551,923	100	678,372	100	695,279	100
자 체 조 달 수 익	66,934	12.13	72,628	10.71	80,776	11.62
정 부 간 이 전 수 익	484,636	87.81	604,267	89.08	581,208	83.59
기 타 수 익	353	0.06	1,477	0.21	33,295	4.79

## 2. 세입·세출결산

###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	㉡	㉢=㉠+㉡	㉣	㉣/㉢	㉤	㉤/㉣	㉥=㉣-㉤	㉥/㉣
합 계	720,566	191,832	912,398	953,587	104.5	707,924	77.6	245,663	26.9
일반회계	646,541	164,228	810,770	848,834	104.7	628,168	77.5	220,666	27.2
특별회계	74,024	27,604	101,628	104,753	103.1	79,756	78.5	24,997	24.6

### 나.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	㉡	㉢=㉠+㉡	㉣	㉤	㉥	㉦=㉣-㉤-㉥	㉧/㉣	㉧/㉣
합 계	720,566	191,832	912,398	960,026	953,587	844	5,595	104.5	99.3
일반회계	646,541	164,228	810,770	854,476	848,834	844	4,798	104.7	99.3
특별회계	74,024	27,604	101,628	105,549	104,753	0	796	103.1	99.2

### 다.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	㉡	㉢=㉠+㉡	㉣	㉤	㉥	㉦=㉢-㉣-㉤-㉥
합 계	720,566	191,832	912,398	707,924	173,081	7,096	24,296
일반회계	646,541	164,228	810,770	628,168	151,907	7,015	23,679
특별회계	74,024	27,604	101,628	79,756	21,174	81	617

## 라.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245,663	173,081	64,006	21,510	87,565	6,469	66,113
일반회계	220,666	151,907	59,827	21,280	70,800	6,110	62,650
특별회계	24,997	21,174	4,179	230	16,765	360	3,463

## 마.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4건 59백만원
- 예산이체 : 없음

## 바. 예비비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비비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1,100	98	98	0	0

## 3. 기금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나)=(다)-㉔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25,868	792	5,078	4,286	26,6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630	△2,231	75	2,306	2,3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00	176	176	0	11,176
체육진흥기금	2,976	△314	1,048	1,362	2,662
자활기금	253	246	250	4	500
고향사랑기금	0	406	406	0	406
재난관리기금	972	333	899	567	1,305
옥외광고발전기금	173	33	49	16	206
식품진흥기금	129	△8	23	31	121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734	2,151	2,151	0	7,885

#### 4.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일반회계(A)	3,294,085	44,940	3,249,146	554,036	633,710	(79,674)
공기업특별회계(B)	305,923	6	305,917	19,999	8,091	11,908
기타특별회계(C)	228,854	1,147	227,707	43,655	48,220	(4,565)
기금회계(D)	28,098	2,259	25,838	2,155	5,387	(3,232)
내부거래(E)	(179,848)	(4,500)	(175,348)	(20,369)	(130)	0
<b>합 계 (A+B+C+D-E)</b>	<b>3,677,112</b>	<b>43,852</b>	<b>3,633,261</b>	<b>599,477</b>	<b>695,279</b>	<b>(75,563)</b>

#### 5. 성과보고서

(단위: 개)

부서명	성과목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b>합 계</b>	<b>22</b>	<b>78</b>	<b>158</b>	<b>28</b>	<b>80</b>	<b>50</b>		
기획실	1	2	7	0	7	0		
정책담당관	1	1	1	0	1	0		
행정지 원 국	행정과	1	3	6	1	3	2	
	올림픽체육과	1	4	10	0	7	3	
	복지정책과	1	6	9	2	4	3	
	가족복지과	1	6	11	2	2	7	
	민원토지과	1	2	7	1	5	1	
	세정과	1	2	3	1	1	1	
	회계과	1	1	2	0	0	2	
	인재육성과	1	5	5	0	2	3	

부 서 명		성 과 목 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경 제 건 설 국	관광문화과	1	5	11	2	3	6	
	허가과	1	2	4	0	3	1	
	경제과	1	6	9	1	2	6	
	환경과	1	4	6	1	3	2	
	산림과	1	2	5	1	4	0	
	안전교통과	1	3	8	0	7	1	
	건설과	1	6	11	4	4	3	
	도시과	1	3	7	3	2	2	
	보건의료원	1	5	5	1	3	1	
	농업기술센터	1	7	21	6	10	5	
	의회사무과	1	1	2	1	1	0	
	상하수도사업소	1	2	8	1	6	1	

### Ⅲ. 검토결과

####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9,123억 98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9,535억 87백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7,079억 24백만원입니다.

○ 결산상 잉여금은 2,456억 63백만원으로

-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730억 81백만원, 보조금반납금이 64억 6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61억 13백만원입니다.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세입결산 (B)	세출결산 (C)	잉여금(B-C)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12,398	953,587	707,924	245,663	173,081	6,469 <sup>1)</sup>	66,113
일 반 회 계	810,770	848,834	628,168	220,666	151,907	6,110	62,650
공기업특별회계	36,714	38,073	33,568	4,505	2,814	0	1,691
기타특별회계	64,915	66,680	46,189	20,492	18,360	360	1,772

## 2. 세입결산

### □ 일반회계 세입결산

####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1%(\*전년도 일반회계 세입현액 8,115억 53백만원)가 감소한  
8,107억 70백만원으로,

#### ○ 징수결정액은 8,544억 76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488억 34백만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8억 44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7억 98백만원입니다.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4.6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34%입니다.

#### ○ 일반회계 세입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 지방세 442억 68백만원(5.2%),
- 세외수입 317억 76백만원(3.7%),
- 지방교부세 3,434억 10백만원(40.5%),
- 조정교부금 129억 99백만원(1.5%),
- 보조금 1,912억 43백만원(22.5%),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51억 37백만원(26.5%)입니다.

1) 보조금 집행잔액 6,469,198,310원은 보조금반납금 7,096,497,570원에서 교부차액 627,299,260원을 제외한 실제 금액임.

- ▶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9.0%이고, 우리군의 재정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9.5%(\*전년도 특별회계 세입현액 850억 32백만원)가 증가한 1,016억 28백만원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1,055억 49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47억 53백만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3.0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24%입니다.

○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7억 9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①	징수 결정액 ②	실제 수납액 ③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③/①	③/②
<b>합 계</b>	<b>912,398</b>	<b>960,026</b>	<b>953,587</b>	<b>844</b>	<b>5,595</b>	<b>104.51</b>	<b>99.33</b>
<b>일반회계</b>	810,770	854,476	848,834	844	4,798	104.69	99.34
지방세	41,195	47,472	44,268	423	2,780	107.46	93.25
세외수입	24,694	34,215	31,776	420	2,018	128.68	92.87
지방교부세	314,552	343,410	343,410	0	0	109.17	100.00
조정교부금등	12,971	12,999	12,999	0	0	100.22	100.00
보조금	192,386	191,243	191,243	0	0	99.41	100.00
보전수입등및기타	224,972	225,137	225,137	0	0	100.07	100.00
<b>특별회계</b>	101,628	105,550	104,753	0	796	103.07	99.24
상수도공기업	36,714	38,691	38,073	0	618	103.70	98.40
기타특별회계	64,914	66,859	66,680	0	178	102.72	99.73

### 3. 세출결산

#### □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107억 70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281억 68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7.5%가 지출되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9억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8.7% 수준이며, 명시이월 598억 27백만원, 사고이월 212억 80백만원, 계속비이월 708억으로, 전년대비(\*전년도이월액 1,642억 28백만원) 7.5%가 감소되었습니다.
- 예산집행잔액은 236억 7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9% 수준이며
  - 원인별로는
    - 보조금 정산잔액 47억 28백만원,
    - 예산절감액 3억 35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억 34백만원,
    - 낙찰차액 84백만원,
    - 지출잔액 141억 96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지출을 보면
  - 농림해양수산 1,275억 71백만원(20.3%),
  - 사회복지 1,056억 90백만원(16.8%),
  - 문화및관광 804억 61백만원(12.8%),
  - 국토및지역개발 610억 8백만원(9.7%) 등의 순으로 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년대비 세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 문화및관광분야로 전년대비(\*전년도 618억 37백만원 지출) 30.1% 증가한 804억 61백만원이며, 이는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등에 따른 지출증가로 확인됩니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16억 2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797억 56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8.5%가 지출되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211억 7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8% 수준이며 명시이월 41억 79백만원, 사고이월 2억 30백만원, 계속비이월은 167억 65백만원입니다.
- 예산집행잔액은 6억 1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6% 수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합 계</b>	<b>912,398</b>	<b>707,924</b>	<b>173,081</b>	<b>7,096</b>	<b>24,296</b>
<b>일 반 회 계</b>	<b>810,770</b>	<b>628,168</b>	<b>151,907</b>	<b>7,015</b>	<b>23,679</b>
일반공공행정	36,286	33,594	668	83	1,940
공공질서및안전	36,421	30,128	5,604	40	650
교육	9,639	9,001	26	0	613
문화및관광	126,522	80,461	41,529	641	3,890
환경	50,852	46,301	1,421	1,381	1,748
사회복지	128,651	105,690	19,276	1,753	1,933
보건	17,953	12,952	4,154	374	473
농림해양수산	168,405	127,571	34,889	2,079	3,86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279	14,640	7,429	588	623
교통및물류	46,971	36,128	9,139	14	1,690
국토및지역개발	91,850	61,008	27,773	41	3,028
예비비	1,002	0	0	0	1,002
기타	72,939	70,695	0	22	2,221
<b>특 별 회 계</b>	<b>101,628</b>	<b>79,756</b>	<b>21,174</b>	<b>81</b>	<b>617</b>
상수도공기업	36,714	33,567	2,814	0	332
기타특별회계	64,915	64,189	18,360	81	285

#### 4.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2023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 전용 · 이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4건에 59백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 〈2023년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4건			827,605	59,119	59,119		
정담 당	책관	정책 발굴 및 기획	207-01	150,000	30,000	2023-11-20	평창휴양소 건립예정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정책 발굴 및 기획	401-01		30,000		
관문 화	광과	축 제 장 기 반 시 설 비 조 성 및 정 비	201-01	26,000	26,000	2023-12-27	임차 장비 수리 공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전용
		축 제 장 기 반 시 설 비 조 성 및 정 비	308-11		26,000		
보 의 료	건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 원) (보 조)	201-01	241,616	1,989	2023-12-27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 부족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 원) (보 조)	101-04	199,000	1,989		
보 의 료	건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 원) (보 조)	202-01	10,000	1,130	2023-12-27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 부족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 원) (보 조)	101-04	200,989	1,130		

#### 5. 예비비 지출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원으로, 우박 피해농가 지원, 냉해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총 2건에 97,60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7,599,950원을 지출하고, 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2023회계연도 예비비 결정현황〉

(단위 : 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예비비지출사유
합계			97,600,000	97,599,950	0	50	
농업기술센터	2023년 우박 피해농가 지원	302-02	90,100,000	90,100,000	0	0	2023년 우박 피해농가 지원
농업기술센터	2023년 냉해 피해농가 지원	302-02	7,500,000	7,499,950	0	50	4월 냉해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 7. 기금결산

- 202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258억 68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0억 78백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2억 86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66억 60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억 9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은 총 264억 46백만원으로

- 예치금회수 수입이 168억 68백만원으로 63.78%,
- 예탁금원금회수 수입이 45억원으로 17.02%,
- 전입금 수입이 40억 50백만원으로 15.31%를 차지하고,

지출은 총 264억 46백만원으로

- 예치금이 221억 60백만원으로 83.79%,
- 예수금원리금상환이 23억 6백만원으로 8.72%,
- 비용자성사업비가 19억 62백만원으로 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25,868	792	5,078	4,286	26,6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630	△2,231	75	2,306	2,3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00	176	176	0	11,176
체육진흥기금	2,976	△314	1,048	1,362	2,662
자활기금	253	246	250	4	500
고향사랑기금	0	406	406	0	406
재난관리기금	972	333	899	567	1,305
옥외광고발전기금	173	33	49	16	206
식품진흥기금	129	△8	23	31	121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	5,734	2,151	2,151	0	7,885

## 8. 재무제표

### ○ 총괄

- ▶ 2023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대비 208억 39백만원(0.6%)이 증가  
3조 6,332억 61백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1,316억 84백만원이 감소한 △755억 63백만원입니다.

### ○ 재정상태

- ▶ 총자산은 3조 6,771억 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0억 6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자산은 전년대비 34억 29백만원이 증가한 2,792억 3백만원(1.24%)으  
로, 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전년대비 46억 31백만원이 증가한 3조 3,979억 9백만원 (0.14%)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총부채는 438억 5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7억 78백만원(22.56%) 감소하였으며 주로 유동부채 등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106억 68백만원(48.14%)이 감소한 114억 93백만원이며, 비유동부채는 전년대비 21억 10백만원(6.12%)이 감소한 323억 59백만원입니다.

### ○ 재정운영

- ▶ 비용은 5,994억 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83억 51백만원(27.24%)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운영비와 기타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 수익은 6,952억 79백만원이며 자체조달수익이 807억 7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1억 48백만원(11.22%)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이 전받은 수익은 5,812억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0억 59백만원(3.82%) 감소하였고 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수익 등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 ▶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755억 6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16억 8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주로 지방교부세 수익 등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 9. 채무결산

### ○ 2023회계연도말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243억 222백만원으로

- 당해연도에 발생채무는 없으며
- 소멸액은 16억 2백만원이며,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접근망 확충 등 지방채무 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7억 19백만원입니다.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24,322	△1,602	0	1,602	22,719
일반회계	23,522	△1,502	0	1,502	22,019
기타회계 (수질개선)	800	△100	0	100	700

10. 성과보고서

-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 78개, 지표수 158건에 대하여 성과 평가한 결과 성과 초과달성 28건, 달성 80건, 미달성 50건으로 달성도는 68.4%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달성도가 3%가량 증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성과지표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지표 측정방법 개선 및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투자에 따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

(단위 : 개)

부서명	성과목표						비고 (달성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22	78	158	28	80	50	68.4
기획실	1	2	7	0	7	0	100.0
정책담당관	1	1	1	0	1	0	100.0

행정 지원 국	소 계	8	29	53	7	24	22	58.5
	행정과	1	3	6	1	3	2	66.7
	올림픽체육과	1	4	10	0	7	3	70.0
	복지정책과	1	6	9	2	4	3	66.7
	가족복지과	1	6	11	2	2	7	36.4
	민원토지과	1	2	7	1	5	1	85.7
	세정과	1	2	3	1	1	1	66.7
	회계과	1	1	2	0	0	2	0.0
	인재육성과	1	5	5	0	2	3	40.0
경제 건설 국	소 계	8	31	61	12	28	21	65.6
	관광문화과	1	5	11	2	3	6	45.5
	허가과	1	2	4	0	3	1	75.0
	경제과	1	6	9	1	2	6	33.3
	환경과	1	4	6	1	3	2	66.7
	산림과	1	2	5	1	4	0	100.0
	안전교통과	1	3	8	0	7	1	87.5
	건설과	1	6	11	4	4	3	72.7
	도시과	1	3	7	3	2	2	71.4
보건의료원	1	5	5	1	3	1	80.0	
농업기술센터	1	7	21	6	10	5	76.2	
의회사무과	1	1	2	1	1	0	100.0	
상하수도사업소	1	2	8	1	6	1	87.5	
읍·면	0	0	0	0	0	0	-	

## 11. 종합검토의견

□ 세입예산 자체수입 편성과 관련하여

○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자체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금이 129억 58백만원 으로 예산현액 대비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세 30억 73백만원, 세외수입에서 98억 85백만원이 초과되어 수납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 자체수입 초과세입금 규모는

2021년 66억 94백만원 / 2022년 99억 66백만원 / 2023년 129억 58백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초과세입금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분야의 경우 초과세입금 비율이 2021년 4.6% /

2022년 5.2% / 2023년 7.5%로 세입추계가 양호한 반면,

세외수입 분야의 초과세입금 비율 및 규모는

2021년 15.6%에 49억 14백만원 / 2022년 26.7%에 78억 5백만원 /

2023년 29.5%에 98억 85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자체수입 초과세입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실제수납액 ②	초과세입금 ③=②-①	비율(%) ③/①	비고
2023	자 체 수 입	74,753	87,711	12,958	17.3	
	지 방 세	41,195	44,268	3,073	7.5	
	세 외 수 입	33,558	43,443	9,885	29.5	
2022	자 체 수 입	70,561	80,526	9,966	14.1	
	지 방 세	41,375	43,536	2,161	5.2	
	세 외 수 입	29,186	36,990	7,805	26.7	
2021	자 체 수 입	69,022	75,716	6,694	9.7	
	지 방 세	36,895	38,588	1,693	4.6	
	세 외 수 입	32,127	37,128	4,914	15.6	

- 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외수입 목별조서를 살펴보면
  - ▲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경우 초과세입금이 16억 20백만원에 달하였으며,
    - ※ 예산현액 55억원 / 실제수납액 71억 20백만원
  -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초과세입금이 5억 59백만원,
    - ※ 예산현액 15억원 / 실제수납액 20억 59백만원
  - ▲ 기타수입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14억 28백만원,
    - ※ 예산현액 50억원 / 실제수납액 64억 28백만원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3억 88백만원의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 예산현액 3억원 / 실제수납액 6억 88백만원
- 세입예산 편성은 군민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총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산의 세입추계 있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 확보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재정의 운영결과에서는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재원은 주민의 복리증진, 기반시설 조성 등 필요예산으로 적의 사용되지 못하여 사업의 시기와 효용성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 자체수입 세입예산 편성시 예년의 징수실적 및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상황,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을 반영한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의 추계와 편성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 세입금 미수납과 관련하여

- 2023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19.3%, 9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의 미수납액은 2억 3백만원, 세외수입의 미수

납액은 7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미수납액 27억 80백만원 중 재산세 5억 29백만원, 자동차세 4억 99백만원, 과년도수입 11억 18백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미수납액 28억 15백만원 중 상수도사용료가 3억 72백만원, 차량관련 과태료가 1억 54백만원, 부담금이 1억 87백만원 등입니다.

### <최근 3년간 미수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2023	5,595	29	9	3,739	305	23	100	145	1,244
2022	4,690	7	10	3,215	48	23	93	298	996
2021	4,171	45	98	2,918	48	27	116	301	706

○ 미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의 비중이 크고, 미수납의 사유도 **납세태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고의성 있는 세입 체납 사례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지능적인 조세 회피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권 소멸시효 도달 전까지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징수방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42억 96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2.7%이며, 일반회계 236억 79백만원, 특별회계 6억 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1% 감소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48억 1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9.5%가 감소하였으며 2023년 전체 집행잔액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상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①	집행잔액 ②			불용율 (%) ③=②/①	국도비보조사업 중 군비부담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잔액 ④	비율(%) ⑤=④/②
2023	912,398	24,296	23,679	617	2.7	4,816	19.8
2022	896,586	39,892	39,186	706	4.4	11,906	30.4
2021	740,334	18,777	17,461	1,316	2.5	4,773	25.4

- 2023회계년도 평창군 결산검사 의견서 p35~ p41를 살펴보면 100% 전액 미집행 사업은 29건 14억 49백만원, 집행잔액 50백만원 이상 사업은 95건 불용액 215억 21백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은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 편성 시에는 분야·부문별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하고 집행·운용 시에는 적기 집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 회계연도 내에 군민을 위한 사업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 확보 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으나,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출예산 이월액과 관련하여

- 2023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0억 81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0%를 차지하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의 예산규모는 855억 16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88억 1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현장 여건, 관련법 검토, 관계기관 협의 소요 기간 및 투자사업의 시기 등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연례·반복적인 사업비 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3년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일반+특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89	125,437	333	191,832	312	173,081
명시이월	180	78,351	199	104,060	160	64,006
사고이월	75	15,204	72	10,269	97	21,510
계속비이월	34	31,882	62	77,504	55	87,565
예산현액 대비	16.9%		21.4%		19.0%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건수	이 월 액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b>합 계</b>	<b>312</b>	<b>173,081</b>	<b>64,006</b>	<b>21,510</b>	<b>87,565</b>	
기획실	6	289	0	289	0	
정책담당관	1	25	0	25	0	
올림픽체육과	23	21,009	4,513	219	16,277	
복지정책과	1	1,152	1,152	0	0	
가족복지과	12	4,074	825	3,249	0	
민원토지과	1	130	130	0	0	
회계과	1	20	0	20	0	
인재육성과	8	4,008	46	10	3,952	
관광문화과	49	20,510	14,965	1,389	4,156	
허가과	2	8,465	0	0	8,465	
경제과	14	9,041	4,351	4,690		
환경과	40	19,525	2,200	626	16,699	
산림과	17	20,278	258	32	19,988	
안전교통과	4	256	238	18		
건설과	52	24,513	15,181	4,386	4,946	
도시과	17	19,295	6,735	1,780	10,780	
보건의료원	15	4,153	3,192	961		
농업기술센터	38	13,267	7,566	3,466	2,235	
상하수도사업소	11	3,071	2,654	350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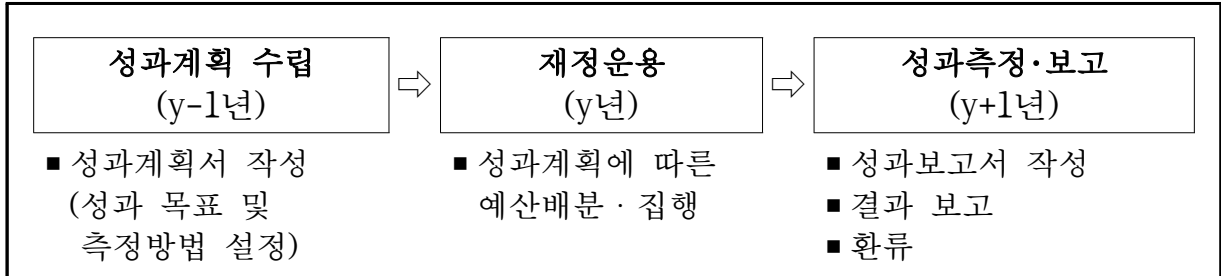
□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p76

- 2023 회계연도 성과지표 총 158개 중 108개를 달성하여 68.35%의 달성률을 보였고 이는 전년 지표 달성률보다 2.97% 증가한 것으로 성과보고 업무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3년간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 건, %)

회계연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달성도			미달성	달성률 (c)=b/a
				계(b)	초과	달성		
2023년도	22	78	158	108	28	80	50	68.35
2022년도	22	80	156	102	21	81	54	65.38
2021년도	22	75	149	91	18	73	58	61.07

- 보건기관 이용자 만족도는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23회계연도에 80점을 목표로 하여 평가된 만족도는 94점으로 성과를 117% 달성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sup>2)</sup>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로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한 경우로 열거하고 있으며 산림과의 경우 하나의 정책사업 목표에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예방 실적”, “산양삼 생산·관리 및 홍보 건수”, “산림 휴양·치유 만족도 조사”와 같이 설정하는 등 산림과, 회계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량·정성적 성과지표를 병행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원의 경우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 하나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22년 달성성과	23년 달성성과
보건기관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및 내부 설문조사	목표	79	80
		실적	80	94
		달성률(%)	101	117

#### □ 지방채 상환 관련

○ 2022년말 우리군의 채무는 243억 21백만원이었으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6억 2백만원을 상환하여 2023년말 현재액은 227억 19백만원으로 6.67% 감소하였습니다.

선심성 사업 확대로 부채가 점증하는 일반적 추세를 감안할 때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재정관리와 예산절감, 부채경감 노력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2017.09.11. 개정)

□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결과

- “지방교부세 증대방안 강구” 등 총 15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은 우리군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의 계획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각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했는지 등을 평가하여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영될 때만이 결산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개선)사항 목록>

연번	제 목	비고
1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증대방안 강구	P22
2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수금 징수 강화	P24
3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 부적정	P26
4	보조금 및 자금관리 철저	P28
5	예산 전액 미집행액 및 불용액 정리 당부	P30
6	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P37
7	재배정 사업에 대한 정산 미실시	P38
8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미흡	P39
9	상·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 처리대책 마련	P41
10	읍·면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목적에 맞게 사용	P43
11	성과보고서 실적치 환류(Feed-back) 적정성 개선	P45
12	특별회계 설치 존속 기한 명시	P46
13	국비/군비 매칭사업 예산 편성·집행 개선 노력 및 반환 지양	P47
14	청년 창업지원사업 개선 노력 및 성과보고서 보완	P51
15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개선 노력	P53

※ 비고 :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 결산은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의안 심사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IV. 참고자료(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